

의 안 번호	1574	【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 심 사 보 고 서
----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일 자 : 2019. 8. 21.(수)
- 나. 발 의 자 : 문희성 의원 외 8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9. 27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10. 14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경로당에 소속된 노인들의 친목도모, 취미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
- 보조금 정산 제도화, 견학기회 제공 등으로 시대적, 상황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 :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→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
- 목적, 정의 규정 (안 제1조 ~안 제2조)
- 지원 대상, 구청장의 책무, 지원계획 수립 (안 제3조~안 제5조)
- 보조금 지원, 정산, 지도감독 (안 제6조~안 제7조)
- 견학, 안전점검, 실태조사, 시행규칙 등 (안 제8조~ 안 제13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유경달)

- 상위법령인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와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라목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경로당에 소속된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,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
- 조례 전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장"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-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- 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 - 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